

의안번호	2204758
의 퇴 인	김영환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7.
추계번호	24E433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전자신고 세액공제 명칭변경 및 공제액을 법률로 규정 등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04조의8(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	○ 제104조의8 조 제목 변경 - (현행)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- (개정안)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○ 세액공제액을 법률로 규정 및 공제액 확대 가능 - (현행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* * 소득세·양도소득세·법인세: 2만원 - 부가가치세: 1만원 - (개정안) 법률로 정하는 금액** ** 소득세·양도소득세·법인세: 2만원 (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: 2만원 이상) - 부가가치세: 1만원 (간이과세자: 1만원 이상)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4조의8(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
 -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사업자(대통령령 규정)에 대한 소득세·양도소득세·법인세 세액공제액을 현행 2만원에서 2만원 이상(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 규정)으로 변경하고,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은 현행 1만원에서 1만원 이상(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 규정)으로 변경

-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, 영세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및 세액공제액 확대 수준이 규정된 대통령령이 마련되어야 함
 - 그러나 현 시점에는 관련된 대통령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특례 확대의 대상 및 금액을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함
 - 참고로 세목별로 2022년 전자신고 등 세액공제액 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전자신고 세액공제 세목별 실적: 2022년 기준

(단위: 억원)

소득세 (양도소득세 외)	양도소득세	법인세	부가가치세	합계
1,105	12	28	434	1,579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